

# '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

지속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(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)의 신성장·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'20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'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1. 21.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## 1 사업 개요

### 가 사업 목적

-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
### 나 지원 분야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\* 기술

#### <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 7] >

1. 미래형자동차(11)	7. 바이오·헬스(24)
2. 지능정보(23)	8. 에너지신산업·환경(42)
3. 차세대SW(소프트웨어) 및 보안(9)	9. 융복합소재(25)
4. 콘텐츠(10)	10. 로봇(17)
5.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(23)	11. 항공·우주(11)
6. 차세대 방송통신(8)	12. 첨단소재·부품·장비(20)

\*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,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

- 「규제샌드박스 4법\*」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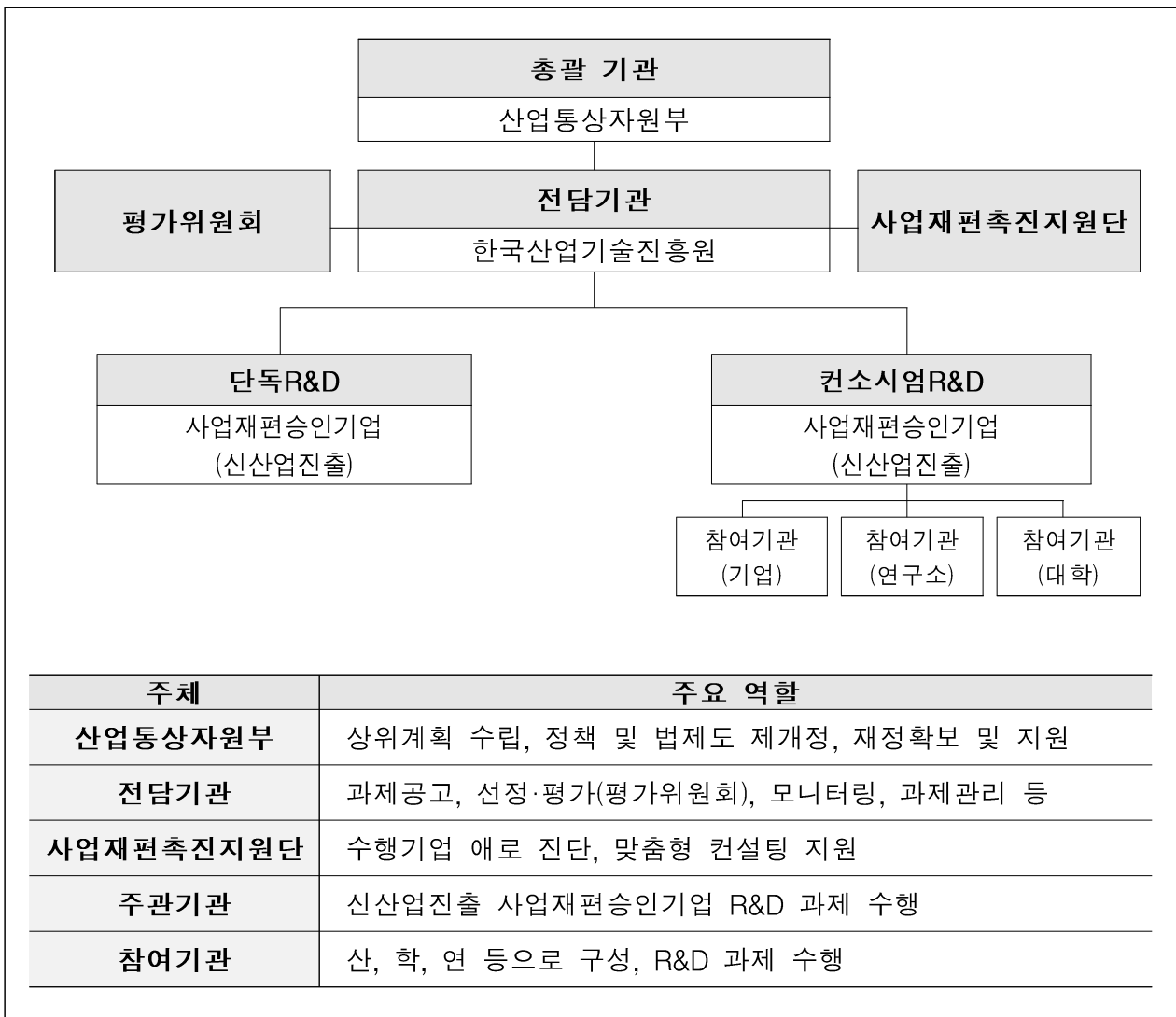
\* 산업융합촉진법,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,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, 금융혁신지원 특별법

**다** 지원 규모 및 기간

구 분	내 용
지원규모	▪ 과제당 최대 3년 이내, 연간 8억원(평균 5억원) 이내 국비지원
지원과제	▪ 11개 내외 (1차)
공모유형	▪ 자유공모
지원기간	▪ 최대 33개월 이내 * (협약기간) 당해연도 '21.4.~'21.12. / 전체 '21.4~'23.12
필수사항	▪ '신산업진출'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·중견기업

\*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**라** 추진 체계



주체	주요 역할
산업통상자원부	상위계획 수립, 정책 및 법제도 제개정, 재정확보 및 지원
전담기관	과제공고, 선정·평가(평가위원회), 모니터링, 과제관리 등
사업재편촉진지원단	수행기업 애로 진단, 맞춤형 컨설팅 지원
주관기관	신산업진출 사업재편승인기업 R&D 과제 수행
참여기관	산, 학, 연 등으로 구성, R&D 과제 수행

## 2

## 지원 내용

### 가 지원 대상

- 주관기관** :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‘신산업진출’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아래 결격사유\*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·중견기업
- \* 중소벤처기업부 ‘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-시장대응형-사업전환(R&D)’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
  - \* 중소기업은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서 연구개발(R&D) 총 투자계획이 7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 불가, 중견기업은 동 조건과 무관
- 참여기관** :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 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2조 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- \* 참여기관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여부와 무관, 대기업은 지원제외(수행기관 자격없음)

### 나 지원 내용

- 기업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「규제샌드박스 4법」에서 정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·생산·제공 등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·사업화를 지원
- \* (시기별 선발 과제 수) 1차 공고(現) : 11개 내외, 2차 공고(4월) : 7개 내외 예상

### 다 지원 기간

- 33개월 이내 지원(협약기간 : 당해연도 '21.4.~'21.12. / 전체 '21.4~'23.12)

### 라 지원 금액

- 과제당 최대 3년 이내, 연간 8억원 이내(연 평균 5억원 이내) 국비지원
- 과제의 총 사업비는 사업재편계획 상 R&D 투자금액을 넘을 수 없음
  -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  -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

구분	정부출연금 지원비율	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
중견기업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% 이하	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
중소기업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% 이하	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% 이상

※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

마 | 지원 방법

□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단독 또는 산·학·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공모 신청

바 | 지원 제외

※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 
(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)

-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  -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- ② 기 개발·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
 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
  -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
-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 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
- ④ 참여제한 여부
  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
-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  -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 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
  -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
- ⑦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수
  -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
  -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

### 3

## 확인 사항

### 가 R&D 컨설팅 지원(선택사항)

#### 지원대상

- '21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신청 완료한 신산업분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
- \*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(R&D) 사업 신청기업 중 동 사업의 지원제외 또는 결격 사유 해당 시 컨설팅 지원에서 제외

#### 지원내용

-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연구개발 컨설팅 업체\*를 활용
- \*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지원업 업종의 기업만 인정
- R&D 기획 컨설팅\*을 진행하여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컨설팅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\*\*
- \* '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' 신청을 위한 R&D 목표 설정 및 타당성 검토, 자료조사, 협력 네트워크 구축, 기술기획/제품화 전략 수립 등 R&D기획 제반 필요사항 등을 포함
- \*\* 실비(VAT제외) 이내(중견기업은 실비의 25% 이내)에서 지원하되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 수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## 지원방식

- 신청기업은 외부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R&D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
- 신청 시 컨설팅 지원여부가 체크된 사업계획서와 컨설팅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컨설팅 활동보고서, 외부전문업체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 서류\*를 제출
- \* 신청서식-11 참고, 컨설팅 수행내용 확인 불가 및 증빙 부실 시 지원 제외
-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사업 접수 및 증빙 확인 완료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

### 나 사업비 산정

- <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>을 준용하여 사업비 산정
-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(연구개발계획서)에 명시해놓은 사업비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사업비 산정 필요

**다** 청년인력 의무채용

□ 의무채용 대상

- ‘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’ 제26조(협약의 체결)에 따라 동일한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기업(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)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,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

□ 채용방법

- 총 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해야 하며,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
- 1차 연도에 1명 이상, 수행기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채용
  - \* 예) 정부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(2년간 지원)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
출연금	6억원	4억원
청년인력 의무채용	1명	1명

- 총 수행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(영리기관만 해당)의 출연금 합계액(계획금액 기준)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의무 배정

□ 기타

-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(채용시점 기준)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함
  - \* 사업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이후 채용한 청년인력 인정가능

**라**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

□ 기술료 징수 대상

-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우수, 완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

□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

- 영리기관은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’에 따라,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\*하되 사업재편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\*\*할 수 있음
  - \*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,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
  - \*\*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통합요령 제8조제2항1호에 따른 「기활법」 사업재편 승인기업 → 각 2년간 총 2회 유예 가능

마 R&D 샌드박스 신청(선택사항)

- R&D 샌드박스란 우수 R&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(선택사항)
- R&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, R&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
- R&D 샌드박스 신청은 R&D 샌드박스(일반) 또는 R&D 샌드박스(지정)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,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

□ 신청자격

○ R&D 샌드박스(일반)

- (R&D 수행결과 우수과제)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“우수”(“조기종료(우수)” 포함)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

\*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(예: 2021.1.20. 공고과제는 2016.1.21.~2021.1.20.를 말함)

\*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

- (R&D 성과활용 우수과제) 최근 5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

\*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(예: 2021.1.20. 공고과제는 2016.1.21.~2021.1.20.를 말함)

\*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

○ R&D 샌드박스(지정) :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과제

- (도전적 R&D과제) 챌린지트랙\* 등 도전적 R&D로 기획된 과제 中 유연한 R&D 추진이 필요한 과제 (“21년 챌린지트랙 과제 중 추천)

\* 챌린지 트랙 : 도전적·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과제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 제3조제1항제9호의 “과제기획검증단”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과제

- (국제공동연구과제) 해외기관이나 해외연구자가 참여하는 과제로 R&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과제

\*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지정된 과제,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

- 지원내용 : 「연구자육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 제9조(R&D 샌드박스 특례)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

주요 지원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, 참여기관의 변경, 사업비 이월</li> <li>○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·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</li> <li>○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</li> <li>○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%까지 사용 가능</li> <li>○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(부가세 포함)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</li> </ul>

- \*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주관·참여) 모두에 적용하며,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- \*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

## 4 |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

### 가 | 지원 절차

추진내용	추진주체	추진일정
사업 공고	산업통상자원부/한국산업기술진흥원	~'21. 2. 26
↓		
사업계획서 접수	신청기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	~'21. 2. 26
↓		
사전검토	한국산업기술진흥원	~'21. 3월
↓		
선정평가위원회 개최	한국산업기술진흥원	~'21. 3월
↓		
결과통보 및 이의신청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~'21. 3월
↓		
수행기관 선정·확정	산업통상자원부/한국산업기술진흥원	~'21. 3월
↓		
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주관기관	~'21. 3월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- (사전검토)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,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
- (선정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, 산·학·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- (이의신청)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- (협약체결)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, 사업계획 및 지원 금액에 대한 협약체결



나 | 평가 기준

평가항목		평가기준	배점(점)
수행계획의 충실성 (25점)	계획수립의 적절성	- 특허/시장조사, 기 개발 여부 검토, NTIS 과제 중복여부 검토 등 사전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? - 객관적인 근거,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, 추진일정 등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?	10
	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	- 사업재편계획서 상 R&D 관련 사항(분야, 예산, 기간 등)과 부합하는가?	15
기술성 및 창의성 (25점)	개발목표의 적정성	-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? - 해당기업의 기존 제품/기술 대비 도전적인 기술인가?	10
	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	-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? -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타당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?	10
	추진전략의 적합성	- 당해년도 및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정한가? - 사업비 산출근거는 적정한가?	5
수행역량 (15점)	수행체계의 적절성	- 연구개발 목표/내용 대비 수행체계(컨소시엄, 참여연구진 등) 구성 및 투입 규모, 역할분담이 적절한가?	10
	리스크관리 역량	-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?	5
사업성 및 파급효과 (35점)	사업재편 기여도	- 사업재편계획 목표달성에의 기여도가 높은가? - 해당기업의 R&D 외 사업재편계획 상 혁신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?	10
	사업화 가능성	- 사업화 계획(추가 투자, 마케팅, 매출 계획, 판로개척 등)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?	15
	파급효과	-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(extra value) 창출이 가능한가?(매출/수출, 신규고용, 수입대체,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)	10
합계			100

다 | 가점 사항

세부내용		점수(점)
1	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(증빙) 관련사업 전담기관에서 받은 확정통보 공문	3
2	NTIS 기준, 최근 5년간(접수마감일 기준)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산업분야*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수행이력이 없는 기업 *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인정받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<별표> 상 신성장·원천기술이나 규제 샌드박스 4법에 따라 진출한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,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름	5
합계 (최대한도)		5

## 5

## 접수 방법 및 문의처

## 가 | 접수 방법

구 분	내 용
접수기간	· '21. 1. 21(목) 09시 ~ '21. 2. 26(금) 18시
접 수 처	· 온라인 등록 (KIAT 사업관리시스템, 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 ) *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
서식교부	·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kiat.or.kr">www.kiat.or.kr</a> )에서 다운로드 가능 - 홈페이지 → 사업·지원 → 사업공고 → 동 사업 공고 선택
접수절차	<p>① 통합 회원가입 -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)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</p> <p>② 온라인 등록 - 주관기관 로그인 → 주요업무 → 과제신청 → 공고조회 → 동 사업 공고 선택 -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</p> <p>③ 파일 업로드 -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, KIAT 사업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) 업로드 -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-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</p> <p>④ 최종제출 -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※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</p>
유의사항	<p>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</p> <p>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</p> <p>③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(접수증 출력) 불가</p> <p>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</p> <p>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</p> <p>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(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)</p> <p>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</p>
기 타	·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( 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 )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*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

**나** 제출 서류

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R&D 과제 신청 시

번호	필수 여부	서류명	파일 형태	비고	서식
1	필수	사업계획서(연구개발계획서)	HWP	주관기관 제출	신청서식-1
2	필수	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모든 신청기관 제출	신청서식-2
3	필수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모든 신청기관 제출 *한 장에 작성 및 날인	신청서식-3
4	필수	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·과제 정보 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	PDF	모든 신청기관 제출 *(총괄)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	신청서식-4
5	필수	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	PDF	모든 신청기관 제출	신청서식-5
6	필수	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	PDF	주관기관 및 신청기관(기업) 제출	
7	필수	사업자등록증	PDF	모든 신청기관 제출	
8	필수	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PDF	모든 신청기관 제출	
9	필수	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	PDF	주관기관 및 신청기관(기업) 제출 *2020년, 2019년, 2018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기준 결산 자료	
10	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PDF	해당 시 제출	
11		신규 참여연구원 채용(예정) 확인서	PDF	해당 시 제출 *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	신청서식-6
12		연구시설/장비 구입 및 활용 계획서	PDF	해당 시 제출 *구입 및 활용(임대 등 포함)하고자 하는 시설·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	신청서식-7
13		시약·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	PDF	해당 시 제출	신청서식-8
14		외주 용역 활용계획서	PDF	해당 시 제출	신청서식-9
15		R&D 샌드박스 신청서	PDF	해당 시 제출(영리/비영리)	신청서식-10

\*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: <http://sminfo.mss.go.kr>

\*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: <http://www.hpe.or.kr>

R&D 컨설팅 지원 신청 시

번호	필수 여부	서류명	파일 형태	비고	서식
1	선택	R&D 컨설팅 지원 확인서	PDF	주관기관 제출	별첨1

\* R&D 컨설팅 지원 확인서는 K-PASS가 아닌 별도 이메일 제출([lgh0604@kiat.or.kr](mailto:lgh0604@kiat.or.kr)) 필요

**다** 문의처

구분		담당	연락처
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	전담기관	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활력지원TF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☎ 02-6009-3522</li> <li>(E-mail) <a href="mailto:lgh0604@kiat.or.kr">lgh0604@kiat.or.kr</a></li> </ul>
		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☎ 02-6009-4374,4378,4390</li> </ul>

## 6

## 유의 사항

## 가

## 관련 규정

- <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>, <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>, <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>, <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>, <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>, <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>, <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 관리지침> 준용

\* 규정확인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[www.k-pass.kr](http://www.k-pass.kr)) 정보 → 사업관리규정 메뉴

\*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[www.law.go.kr](http://www.law.go.kr)) → '통합검색' 선택 후 요령명 검색 → 세부내용 확인

## 나

## 기타

-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\* 적용 대상 사업임

\*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[www.rcms.go.kr](http://www.rcms.go.kr))

-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

-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,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,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,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. 다만,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

-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,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.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,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. 다만,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,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 계획서내용(추진방법, 편성도,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, 사업비 구성 등)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

-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외의 경우,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
□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

-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. 이때,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
-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
  - 다만,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
-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

□ 보안등급 분류
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외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
 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□ 참여연구원의 참여율

-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% 이상이어야 함

□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

-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,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,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,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. 다만,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

## 7

## 사업설명회 일정

□ 사업내용,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

구 분	개최일자	진행방식
온라인 사업설명회	'20. 1. 25(월) 15:00~	KIAT 유튜브 설명 동영상 게시 (유선, e-mail 질의응답 진행)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\*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설명회 추진 예정으로 추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대상 세부안내 예정

